

改憲과 教育·學術·文化振興政策

鄭 驍 謨
中央大圖書館學科教授

序

최근 改憲에 대한 論議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國民들의 관심도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憲法은 한 國家의 기본법으로서 가장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살림의 기본적인 방침이요, 이에 대한 온 國民의 확고한 서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1948년에 처음으로 民主憲法을 制定하여 이에 따라 憲政을 실시해 온 이래 수차례 결쳐 改憲을 하는 試行錯誤를 겪어왔지만 이번처럼 改憲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國民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한 예는 없다. 그것은 현재의 이른 바 維新憲法이 당초부터 너무나 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까닭에 이로 인해서 國家의in 試鍊을 겪었으며, 문제의 解決을 위해서 現政府가 먼저 改憲을 發議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주로 政治的 權力構造에 집중되어 있고, 國家의 기본적인 政策內容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약한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실은 政治構造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國政의 内容과 方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筆者는 憲法이나 法律에 대해서는 門外漢이지만 상식 이하의 상식적인 면에서 教育·學術·文化에 관한 基本政策을 憲法에 확고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논급하고자 한다.

韓國教育의 痘病

우리 나라의 教育問題는 광복 이후 현재까지 해마다 한번도 빠짐 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文教部長官이 바뀔 때마다 教育政策이 바뀌어지고, 이런 때마다 이것이 社會的으로 물의를 일으켜 왔으며, 해가 거듭 할수록 문제점은 더욱 커지고 심화되어 현재와 같은 심각한 현실을 가져왔다. 최근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현재는 學校教育不信 사태를 넘어서 學校不在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學生들이 學校에 가는 것

은 教育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졸업장(자격)을 받기 위해서 가고, 進學을 위한 실력은 課外 공부에서 기른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악타까운 실정이다. 이러한 課外 의존 교육현상은 世界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教育2重構造의 변태적인 痘病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教育의 痘病로 인해서 學父母들의 教育費 부담만을 더욱 커지게 할 뿐만 아니라 學生들에게는 진실한 人間教育이 아니라 智略만을 주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課外教育의 痘病은 教育 그 자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를 葛藤과 分裂의 상태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課外費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能力이 없어서 課外를 시키지 못하는 가정과 보다 부유한 가정 간에 階層化되고 異質化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跛行的 教育의 痘病로 인해서 한 나라에 여러 개의 國民階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分裂 상태는 教育의 社會의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安保의 관점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돈이 많아서 課外에만 의존하고 무리하게 시키는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經濟的能力이 없어서 課外를 시키지 못하는 家庭에서는父母와 자녀 간의 심각한 갈등과 불화의 현상이 속출되며, 결국 이러한父母들은 자녀에 대한家庭教育도 시킬 능력마저 상실하게 되며, 이러한 家庭의 자녀들은 社會나父母에 대한 불만 때문에 탈선할 가능성이 많아지며, 社會의in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또한 經濟的인 측면에서 볼 때 1천萬 이상의 教育人口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家計는 누증하는 課外費支出로 거의 과탄적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課外費는 學校教育費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액수이다. 10여분 지도를 받는데 5만원~10만원, 한 科目 그룹과의비가 70만원, 入試 임박해서 이른바 「반짝파의」로 3천만원을 번 과외전문교사가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리하여 한 해에 전국 가정에서 지출하는 과비가 6천억에서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推算되고 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이와 같이 어떤 측면에서 본다해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課外病의 치유와 정상적인 學校教育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全國民的 과제로 삼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연구해서 그 解決策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課外病의 原因과 治療處方

그러면 이러한 課外病이 발생한 原因이 무엇인가? 그原因是 観察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分析될 수 있을 것이며, 그原因의 輕重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筆者는 그原因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分析하고 그治療處方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學校數나 教室數가 부족하고, 施設이 미비하고, 教師數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學生을 한 教室에 수용하거나 2部制 授業을 함으로써 教育效果가 적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教育熱이 높고 大學進學人口가 늘어나는데 비해 大學의 문은 좁기 때문에이라고 풀이된다.

셋째로, 가장 근본적인 原因은 學父母나 學生들의 學校不信風潮에 있고, 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教師不信風潮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解決方案은 첫째, 學校數와 教室數 및 教育施設을 시급히 확충·보완하고, 부족한 教師를 充員해서 각급학교에서 적정수의 학생으로 學級을 편성하여 教育시킬 수 있도록 教育投資를 충분히 하면 될 것이다.

둘째로, 大學의 施設을 확충하고 教授陣을 充員하여, 大學生 定員을 충분히 늘려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大學에도 教育投資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의 문제는 참으로 난제 중의 난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時間을 요하는 문제이다. 우선 學校나 教師의不信風潮가 왜 생겼느냐 하는 문제부터 檢討해 볼 필요가 있다.筆者는 그 첫째 요인을 教師들의 教育에 대한 使命意識의 결여, 또는 無誠意 無能力에 있다고 본다. 그러면 왜 教師들이 使命意識이 없고 無誠意하고 無能力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教師들에 대한 社會의 經濟的인 처우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다. 社會의으로 존경을 받고 經濟의으로 家庭生活이 안정될 수 있었다면 教師들은 學校教育을 天職으로 알고 그 使命과 誠意와 있는 能力を 다했을 것이며, 아동들이나 學生들이나 學父母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왔을 것이며, 교육이 정상화되었을 것이다. 教師들이 社會의으로 소외되고, 學父母나 學生들로

부터 不信의 대상이 되고, 經濟的으로 生活의 불안을 느끼면서 教職을 天職으로 생각하고 教育에 충실할 수가 없다. 自己의子女는 大學에도 보내지 못하면서 남의子女들만을 가르치는데 誠意와 使命을 다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좀 능력 있는 教師는 다른 分野로 轉職을 하거나 課外指導를 하여 그 수입을 생활수단으로 삼게 되며, 그러한 教師들은 자연學校教育에는 불충실하여지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현재와 같은 惡循環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教師들을 탓하거나 나무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慰勞해야 할 일이다.

이問題의 原因은 결코 教職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政府의 教育政策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만약 政府가 현재까지 教職者들에게 社會의으로나 經濟的으로 우대하여 최소한의 안정된 家庭生活을 영위하면서 教育에 임할 수 있게 했었다면 이러한 惡循環이 있을理由가 없다.

이에 대한 실례를 들면 1980年 2月 3日(朝鮮日報)에 새로운 名門高等學校 3개교가 소개된 바 있다. 현재의 名門高等學校와 名門大學에 進學한 학율이 많다는 것으로서 評價되지만, 여하간 이 세 學校가 名門高等學校로 登場한 原因이나 背景은 공통적으로 校長이 特質한 教育的 使命感을 가지고 훌륭한 先生님들을 모셔다가 生活을 보장하고, 學校教育에 專念하도록 하는 동시에 學生들로 하여금 課外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과 차 가지지 못할 만큼 學校教育을 충실히 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결국 이것은 教師들의 처우를 대폭적으로 改善해야만 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대 教職者들에 대한 처우가 더욱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1964(5)년경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公務員의 報酬規程을 再調整하는데 있어서 教育公務員의 봉급을 引下하여 一般公務員의 봉급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 때부터 國·公·私立을 막론하고 봉급인상이 인색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教職이 天職이 아니라 賤職으로 탈락하여 社會의 인기 있는 職種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것을 그대로 써히기는 아깝고 教師나 한다는 달갑지 않은 태도로 教職에 들어온 사람도 그동안 상당수 있다고 생각된다.

教育이야말로 현대에 있어서는 國家와 民族의 가장 중요한 大事業이요, 教師職이야말로 知性과 德性이 결합된 人格으로서 社會人의 師表가 되는 聖職인데, 불가피한 人員數만 充員해서 형식적으로만 教育을 하게 되니 그 教育이 온전하게 펼리가 만무하다. 물론 教師도 하나의 社會人이기는 하지만 教育은 工場에서 商品

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軍事訓練처럼 命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되 知性對知性, 人格對人格으로 被教育者에게 감화를 주고 가르침에 대한 信賴를 주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教師의 言行과 그 가르침이 學生이나 學父母들의 눈에 훌륭하게 完熟된 것으로 보일 때 비로소 온전한 教育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學父母들이 子女들에게 學校에 가서 先生님 말씀 잘 듣고 공부를 잘 하라고 아무리 해도 感受性이 예민한 學生들이 볼 때 先生님이 특정한 學生만 편애를 하는 눈치가 보이거나, 先生님의 人格이나 가르침이 자기의 弟이나 언니나 父母나 친지나 課外教師보다 못하다고 생각될 때, 정말 그 가르침이 學生들의 머리 속에 온전하게 전달될 것인가? 그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러한 멜리케이트한 상황이 누적되면 學生들의 心性은 비뚤어지고 구겨지게 마련이다.

이것은 經濟危機보다도 더 무서운 教育危機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第2세나 後孫들에게 아무리 많은 遺產을 물려 준들 그들에게 비뚤어진 心性이나 구겨진 人格을 물려준다면 그것이 무슨 價値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教育問題는 이러한 深層에 깔린 문제를 숨김 없이 노골적으로 털어 놓고 진지하게 檢討하고 研究해서 國家와 民族의 장래를 위한 教育의 百年大計를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解決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열쇠는 결국 대담한 教育投資에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세 가지 문제가 전부 教育投資와 그善用에 달려 있는 것이다. 學校와 教室 등의 教育施設을 확충하고, 教師들의 처우를 충분히改善해서 生活을 안정시킴으로써 知德이 겸비된 훌륭한 先生님들이 앞을 다투어 學校教育에 獻身해서 그 聖職에 專念하게 하는 것이 學校教育의 原理요 基本哲學일 것이다.

憲法에의 明文化

그렇기 때문에 최근 教育稅를 신설하거나 教育投資를 확충해야 한다든가 大學生定員을 늘리고 卒業定員制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社會의 압도적인 여론이요, 現政府에서도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 상당히 改善되리라고 예견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改善되느냐 하는 문제와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外國의 教育投資에 대해서 1月 26日字 「朝鮮日報」에도 소개된 바도 있으나 우리 보다 몇십배의 公教育費를 投資하고 있는 外國의 예를 보면 현재까지의 우리의 教育費를 가지고 현재 만큼의 學校教育을 유지해온 것도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教育投資는 國家財政이 허용될 수 있는 한 最大限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한편 이것이 國家의 基本的인 政策으로서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改憲하는 차제에 이를 憲法에 明文化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도 國防費나 기타 產業投資 등에 중점을 두게 되는 國策이 생길 때마다 教育豫算은 줄어들고, 政權이 바뀌거나 文敎部長官만 바뀌어도 文敎政策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憲法에 教育과 學術에 관한 條項을 보면 “第19條 ①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 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서 보호한다.” “第27條 ① 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가진다. ③ 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 教育의 自主性과 政治的 中立性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 教育制度와 그 運營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서 정한다” 등이다.

이를 보면 상당히 막연하고 애매하며 國家나 政府의 教育에 대한 義務나 責任 또는 教育財政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自由中國의 憲法을 살펴보면 第五章에 教育·文化에 관한 章을 두어 教育·文化에 관한 國家의 義務를 명백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言하고 있다. 예를 들면 “第161條 中央政府 및 地方自治團體는 奨學金項目을 널리 設置하여 學行이 優秀하나 進學能力이 없는者를 補助한다.” “第163條 國家는 각 地域教育의 均等한 발전에 置重하여야 하며, 아울러 社會教育을 推進하여 一般國民의 文化水準을 提高시키고 邊境 및 價地의 教育文化 經費는 國庫로부터 補助를 받는다. 그 중요한 教育文化事業은 中央政府에서 관리 혹은 補助한다.” “第164條 教育·科學·文化的 經費는 中央에서는 그豫算總額의 100분의 15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省에서는 그豫算總額의 100분의 25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市縣에서는 그豫算總額의 100분의 35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法에 의거하여 설치된 教育文化基金 및 產業이 保障해 주어야 한다.” “第165條 國家는 教育·科學·藝術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生活을 보장해야 하며, 아울러 國民經濟의 進展에 의하여 수시로 그待遇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보면 우선 그 國家의 확고한 教育政策을 알 수 있고, 中央政府나 地方自治團體의豫算 가운데 教育豫算이 얼마나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國家政策上 教育과 學術을 얼마나 重要視하는가를 알 수 있다. 中華民國이 30여년간 그들의 傳統的인 政治制度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社會의 安定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教育·科學·culture를

지극히 존중하는 政策을 수립하여 教育者나 學者 등의 知識階層을 우대하고 그들의 生活을 安定시켜 왔기 때문에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政治制度는 여하간 우리 나라도 中華民國의 이러한 政策에 따른다면, 中央政府의 豫算制度에 반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制度下에서는 아마도 教育豫算이 年間 國家豫算 總額의 30%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教育制度나 教育財政은 教育法이나 教育法 施行令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法律이나 法令은 政府의 의도에 따라 용이하게 改定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规定을 憲法에 明文化해야 할 것이다.

教育財政의 均配原則

그러나 教育政策이나 教育財政을 憲法에 规定하고 이를 충분히 확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教育機關에 均等하게合理的으로 配定되어 效果的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그 적은 教育財政마저도 均等하게合理的으로 사용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教育은 國家의in 計劃이고 民族의in 大事業인데, 예를 들면 中·高等學校나 大學이나를 막론하고, 國公立學校에는 그 施設이나 人件費 등을 中央政府나 地方自治團體에서 전달을 하면서 私立學校에 대해서는 財政補助도 없이 學校法人에 일임하고 行政的으로 간접만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中·高等學校에 대해서는 大都市에 있어서는 平準化政策에 따라 私立學校에 대해서도 學生을 일방적으로 配定하고 그 教育을 委任하면서도 財政補助도 없이 行政的으로 간접만 한다는 것은 전혀 事理에 맞지 않는다. 本質的으로 보면 마땅히 國家에서 해야 할 教育事業을 私立教育團이 맡아서 代行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앞으로는 國·公·私立을 너무 차별할 것이 아니라 國·公立에 대해서는 그 施設의 責任만을 國家의 地方自治團體가 맡고 人件費 등은 각 學校單位로 學生으로부터 받는 授業料로서 自體的으로 解決하게 하는 동시에, 私立學校에 대해서도 施設費의 半額 이상을 政府나 地方自治團體에서 부담하여 補助하고, 기타는 각 學校單位로 解決하도록 하는 方案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특히 大學의 경우를 예를 들면 國立大學은 國家에서 設立하고 施設하고 教授나 職員이나 國家公務員으로서의俸給을 지불하고, 私立大學의 경우는 그 設立이나 施設이나 運營 일체를 財團이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私立財團에 일임하면서 行行政的으로 간접만 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私立大學學生들의 登錄金은 國立大

學生들의 3배가 넘는 額數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게 한 原因은 결국 教育의 均等原則이 아니라 오히려 教育에 있어서의 特惠主義가 지금까지 正當化되어 왔기 때문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政府는 私立大學에 대해서도 施設費를 國庫에서 補助함으로써 學父母나 學生들의 經濟的 부담을 경감하도록 制度化해야 할 것이다.

大學의 問題

大學의 경우를 살펴 보면 大學은 大學대로의 더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大學教授는 본래 教育에 종사하는 한편 그들의 學問을 바탕으로 國家나 社會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능이 있지만 둘이켜 보건대 과거 10여년 동안 일부의 大學教授들이 國家의 政策에 있어서 非理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合理화하고迎合했기 때문에 國家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施策에 관여한 教授들까지도 學生들로부터 御用教授니 하는 別名을 얻어 받는 羞恥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리고 어느 면에 있어서나 政府의 施策에 대하여 항상 批判的인 態度를 고수한 教授들이 權威를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文敎部는 大學의 施設基準令 등을 정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大學圖書館들이 參考文獻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學生들이 課題學習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實驗大學이라는 이름으로 先進國의 예에 따라 學點이나 講義時間 등을 둘에게 되었다, 系列別學生募集이나 畢業論文制度하여 大學을 政府의 의도에 따라 마구 혼들어 놓아도 大學에서는 묵묵히 순종만 해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大學의 權威나 大學教授의 教權도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教授의 人格이나 學問에 대한 權威가 상실된 상황에서 正常的인 진정한 教育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크게 걱정스럽다.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某大學에서는 學生들이 이미 口舌에 오른 教授들에게 退任해 줄 것을 謹論하고 있다니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教育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大學教授들에 대한 社會의 經濟的인 處遇가 빈약했고, 學術文獻의 미비, 實驗施設의 미비 등 學問에 전염할 수 있는 조건과 風土가造成되지 못한 상태에서 大學에 대하여 政治的 權力이나 行政力이 너무나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學問이나 教授의 權威가 無氣力해지고 따라서 學生들로부터 不信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起起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떠한 政治的 權力이나 行政力이 大學의 教權을 침해하지 않도록 憲法上에 명백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教育도 本質的인 면에서 보면 國家의 유능한 人才를 기르는 가장 기초적인 國防產業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自由黨時代에 가난한 나라에 大學生數가 많다고 하여 이른 바 大學亡國論도 나온 바 있으나 그 時代에 배출된 大學生들이 바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產業界의 旗手요, 모든 分野의 重鎮들이 아닌가. 이제는 軍兵力도 知識이나 技術水準이 낮으면 무기력한 劣等兵이 될 수 밖에 없다. 高性能의 武器開發이나 生產도 知識과 技術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웃에 있는 日本이 軍部組織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 그들이 世界의 四大強國 중의 하나로 評價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立證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에 있어서의 教育

은 學術을 啓發하여 國家를 保衛하고 繁榮하게 하는 가장 中대한 知識產業이라는 것을 否認할 수 없다.

이러한 教育과 學術을 國家나 政府에서 保護하고 적극적으로 育成시키지 않는다면 國家가 演進하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과거나 現재나 미래도 教育과 學術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發展시켜야만 國家나 社會가 演進하게 발전한다는 것은 永久的으로 변하지 않는 真理일 것이다.

筆者는 法學者나 法律專門家도 아니요 教育學者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大學教育과 學術의 育成政策에 관해서 政權이 아무리 바뀌어도 영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憲法에 어떻게 明示하느냐 하는 것은 이 分野의 專門家들의 일이요 筆者는 다만 私見의 일단을 문제로서 제기해 둘 따름이다.

新刊案内

韓國十進分類法(KDC)

第3版(第1卷 : 序說·本表, 第2卷 : 索引)

- 韓國圖書館協會 分類分科委員會(委員長 李丙洙)에서 推進하여 온 韓國十進分類法(KDC) 改正(全訂)作業이 1979年度末에 大尾를 보았습니다.
- 本協會 出版部에서 發刊作業을 進行하여 第1卷이 1980年 5月 末日 發行豫定입니다.
- 本 KDC는 第1卷(序說·本表) 第2卷(索引)으로 나누어 發行되며, 第2卷은 1980年 7月末에 出刊됩니다.
- 第1卷·第2卷 合本의豫定價格으로 25,000원을豫想하고 있습니다.
- 購入申請은 韓國圖書館協會로 하시고, 代金은 代替計座 537530으로 拂入하시거나 또는 小額換으로 送金하시면 됩니다.

韓國圖書館協會 出版部

